

부산지방법원 2017. 5. 11 선고 2016나52002 판결 [건물매수청구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17. 5. 11 선고 2016나5200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6. 10. 4 선고 2015가단243947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 2017. 4. 13.

판결 선고 2017. 5. 1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. 10. 4. 선고 2015가단24394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 피고들은

연대하여 원고에게 111,623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하는 부분]

원고는,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기간, 차임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(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231 판결,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43772, 43789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건물매수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안승호

판사이강은

판사김지영